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손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6.

발 의 자 : 손 솔 · 전종덕 · 임미애
김종민 · 윤종오 · 박민규
이용우 · 정혜경 · 이기현
전진숙 · 한창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에서 구인을 할 때 임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‘내규에 따름’ 또는 ‘협의 후 결정’으로 표시함. 이러한 관행 때문에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일지 예상하지 못하고 고용계약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.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고용노동부에 ‘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’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.

이에 구직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설정을 위하여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광고 시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함(안 제8조의2 신설).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임금정보의 공시) ①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.

1.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 항목의 산정 기준
2. 위 임금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

② 구인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모집·채용 공고의 내용 및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8조의2(임금정보의 공시) ① 구</u> <u>인자는 채용광고에 다음 각 호</u> <u>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</u> <u>항목의 산정 기준</u></p> <p><u>2. 위 임금에 적용되는 취업규</u> <u>칙 및 단체협약</u></p> <p><u>② 구인자는 동일한 사업 내의</u> <u>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</u> <u>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</u> <u>모집 · 채용 공고의 내용 및 절</u> <u>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</u></p>